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역세권개발사업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9682호, 2023. 6. 16. 공포·시행)으로,

개발구역 지정 단계에서 시행하던 지방의회 의견 청취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가 실시계획 승인 단계로 변경되었으므로 개발구역 지정 단계에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 및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는 등 법 개정 내용에 맞추어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가 개발구역 지정 단계에서 실시계획 승인 단계로 변경(법 제6조, 제13조)됨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단계에서 “지방의회” 관련 사항을 삭제(안 제6조)

나.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규정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결정으로 조정(법 제9조)됨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 내의 도시·군관리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관련 사항을 삭제(안 제9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등과 지방의회의”를 “등의”로 한다.

제9조제6호 중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 이하”를 “이하”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① 지정권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주민 등과 <u>지방의회의</u> 의견을 청취하려면 관계 서류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① - ----- ----- <u>등의</u> ----- -----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7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9조(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u>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 이하</u> “도시·군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결정에 관한 사항	6. ----- ----- ----- <u>이하</u>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942